09-01호

Regional Economic Focus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1월 2일

ISSN 1976-0507 Vol. 3 No. 1

중·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페루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중·페루 FTA 협정(China-Peru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P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 CP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짧은 기간에 타결된 FTA 협상으로, 11개월간의 6차 협상으로 타결에 성공하였음.

- 양국의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원자재 확보 수요와 페루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세 유지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상품협상에서 중국은 대페루 수입액의 약 99%(관세품목 기준 94.5%), 페루는 대중국 수입액의 90%(관세품목 92%)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최장 1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서비스협상에서 중국은 채광업, 컨설팅, 통번역, 교육, 여행 등의 부문에서, 페루는 채광업, 연구개발업, 중국어교육, 중의학, 무술 등의 부문에서, GATS 양허안보다 진전된 개방양허를 기재하였음.

▣ 투자협상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진전된 수준을 이루었음.

▣ CPFTA는 상품협정, 특히 농산품에 대한 협정문과 관세삭감 양허가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자세하고 정교하여, 향후 한·중 FTA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페루 FTA 타결 및 특징

■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페루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중·페루 FTA 협정(China-Peru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P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1)]

- 2008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10월까지 총 6차례의 협상을 매우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으며,[2)] 2009년 초에 협정에 서명하고 3분기 경 발효될 전망임.[3)]

- CPFTA는 중국이 체결한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세관절차, 무역구제, TBT 및 SPS, 경제협력과 분쟁해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임.

■ CP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되어 11개월간 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에 이르렀음.

- 2007년 3월 타당성 공동연구 시작, 2007년 8월에 공동연구 완료, 2008년 1월 1차 협상 시작, 2008년 11월 6차 협상에서 타결됨.

○ 기체결 FTA의 협상 시작에서 타결까지 소요기간: 중·뉴질랜드 FTA 3년 5개월, 중·칠레 FTA 3년 8개월, 중·파키스탄 FTA 3년 5개월 등.

2. 중국과 페루의 경제관계

■ 중국은 미국에 이은 페루의 2대 무역 파트너이며 2007년 기준 양국의 무역액은 미화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양국의 무역은 근래 매우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01년 양국간 교역액은 중국의 대(對)페루 수출이 1.8억 달러, 수입이 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수출이 17억 달러, 수입이 43억 달러에 달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1) 商務部新聞辦公室, 中國-秘魯自貿區談判成功結束(2008.11.20).
2) 2008년 11월 22~23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APEC 연례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하기 전에 협상 타결을 하기 위해, 원래 10월 13~18일로 예정되었던 6차 협상이 23일까지 연장 진행되었고 한 차례의 소규모 추가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International Trade Daily*(2008.11.24), "China, Peru Conclude Bilateral Negotiations On Free Trade Pact to Be Signed in Early 2009."

그림 1. 중국의 대페루 무역 현황(2001~07년)

(단위: 백만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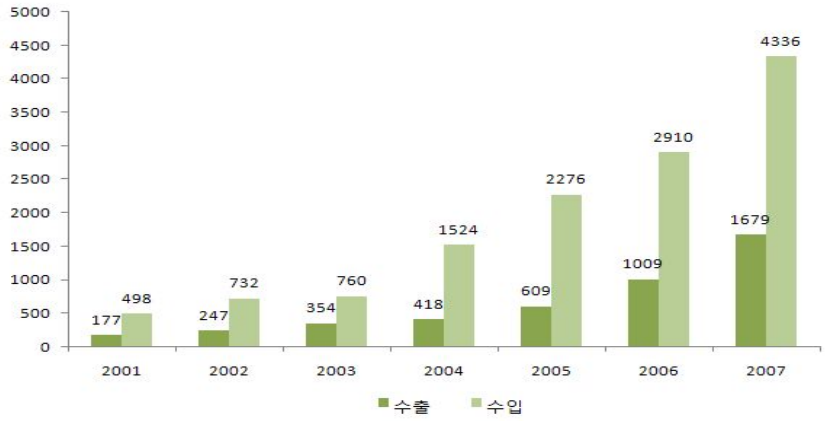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

■ 중국은 페루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대페루 수입 중 주요 품목인 광물에서 비롯된 것임.

- HS6 단위 기준의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이 광물자원이며, 이들이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하고 있음.

표 1. 중국의 대페루 수입 10대 품목(2007년)

순위	HS6 단위	품목	2007년 수입액(백만 달러)	총 수입액 비중
1	260300	동광과 그 정광	1,940	45.15
2	270900	석유 및 역청유	554	12.89
3	230120	어분(漁紛)	526	12.24
4	260700	연광과 그 정광	391	9.10
5	260111	비응결 황화철광	253	5.89
6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	172	4.00
7	260112	응결 황화철광	131	3.05
8	26139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62	1.44
9	261610	은광과 그 정광	53	1.23
10	030749	오징어	50	1.16

자료: KITA.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양국의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원자재 확보 수요와 페루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세 유지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페루는 2004년 12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를 비교적 일찍 인정하였고, 양국은 농산물 수출 및 관광 등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FTA 체결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3. 중·페루 FTA 협정의 주요내용

가. 상품협정

1) CPFTA 상품 협정문의 구조와 특징

■ CPFTA의 상품 협정문은 중국의 기체결 FTA들에 비해 조항의 수와 포함범위가 넓으며, 농업을 별도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협정문에는 전문장비, 전시용 제품, 상품샘플 및 스포츠를 위해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면세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상품의 일시반입(Temporary Admission of Goods)과 수출입 제한, 수입허가 등의 조항이 최초로 도입되었음.

- 농업섹션(Section F Agriculture)[4]에는 수출보조금, 농산품에 대한 국내 보조정책, 페루의 국내 규정인 '가격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5]에 대한 조항(14조)을 협정문에 삽입하였음.

○ 농산품 보호를 위한 가격밴드 제도에 해당되는 제품 47개의 리스트를 부속서로 첨부함.

- 또한 상품무역위원회 산하에 농산품 및 수산품 무역을 위한 특별작업반(Ad-Hoc Working Group on Trade in Agricultural and Fishery Goods)을 두는 데 합의하였음.[6]

---

4) FTA 협정문은 Part → Section → Article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5) 가격밴드 제도(Price Band System): 일부 농산품에 대해 수입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동 가격밴드 이하로 낮아질 경우 기본관세 이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해당연도 이전의 평균 국제가격 수준으로 수입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조금 혜택이 없는 자국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6) 중국은 농업을 별도의 섹션으로 하는 것, 가격밴드 제도를 협정문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으나 페루의 지속적인 요구로 관철되었음(중·페루 FTA 협상일지). 또한 페루는 농수산업에 관한 부속위원회(Agricultural subcomittee) 설립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은 반대하여, 협상 결과 준작업반을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함.

표 2. CPFTA 및 중국 기체결 양자 FTA 상품 협정문 구성 비교

	중 · 페루(08)	중 · 칠레(05)	중 · 파키스탄(06)	중 · 뉴질랜드(08)	중 · 싱가포르(08)
1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2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3	관세철폐	관세철폐	관세철폐	관세면제	관세
4	관세면제	행정수수료 및 형식	행정수수료 및 형식	관세철폐 가속화	관세철폐 가속화
5	**상품의 일시반입**	지리표시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행정수수료 및 형식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6	**수출입제한**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상품무역위원회	농산품수출보조금	국영무역기업
7	**수입허가**	농산품수출보조금		비관세조치	
8	행정수수료 및 형식	상품무역위원회		소비자보호	
9	관세평가	정의		농산품 특별세이프가드	
10	**농업협정의 범위**			중기리뷰메커니즘	
11	농산품수출보조금			연락처	
12	국영무역기업			상품무역위원회	
13	**농산품에 대한 국내보조정책**				
14	**가격밴드 제도**				
15	상품무역위원회				
16	정의				

주: 굵은 글씨는 CPFTA에만 포함된 상품 협정문 조항.
자료: 각 협정문에서 필자 정리.

2) CPFTA 관세삭감 모형(modality) 및 민감품목 처리

■ CPFTA의 관세삭감 모형은 중국이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 가장 많은 14개 카테고리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즉각 철폐부터 최장 17년 내 단계적 관세철폐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 A~C 카테고리는 10년 이내에 단계적 관세철폐를 시행하는 제품군이며, D 카테고리는 관세철폐 예외의 초민감품목군으로 설정하였음.

- 나머지 E~L까지의 10개 카테고리는 일부 농산품과 민감품목인 공산품의 관세철폐 유예를 위한 소수 품목군임.

표 3. CPFTA 관세삭감 모형(modality)

Category	삭감 계획	Category	삭감 계획
A	즉각 철폐	H	15년 내 철폐
B	5년 내 철폐	I (중국)	17내 철폐
C	10년 내 철폐	J1 (페루)	초기 4년간 현행관세 유지, 17년 내 철폐
D	관세철폐 예외	J2 (페루)	초기 8년간 현행관세 유지, 17년 내 철폐
E	16년 내 관세특혜폭(MOP)에 따라 단계적 삭감	J3 (페루)	초기 10년간 현행관세 유지, 17년 내 철폐
F (중국)	8년 내 철폐	K (중국)	2015년까지 단계적 철폐
G	12년 내 철폐	L (중국)	2015년까지 단계적 철폐

주: 괄호 안은 해당 국가만 양허품목이 있는 경우를 표시.

자료: CPFTA 양허문에서 필자 정리,

- 카테고리 E는 주로 칠레의 민감품목인 섬유와 일부 공산품의 16년 내 관세특혜폭에 따라 단계적 관세삭감을 하도록 함.

- F, G, H, I, J1, J2, J3, K, L 등 9개 카테고리는 대부분 농수산물 부문의 민감품목을 위한 장기적 관세철폐 유예 스케줄을 위해 만들어졌음.

■ 특히 농산품을 위주로 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품목(product) 대 품목의 협상을 진행하였음.

- 중국이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포도(HS코드 08061000)와 사료용 어분(HS코드 23012010)에 대한 관세삭감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 각각 카테고리 K와 L을 만들었음.

표 4. CPFTA 카테고리 K, L의 관세삭감 스케줄

	2009.1.1	2010.1.1	2011.1.1	2012.1.1	2013.1.1	2014.1.1	2015.1.1
카테고리 K(포도) 적용관세율	7.80%	6.50%	5.20%	3.90%	2.60%	1.30%	0.00%
카테고리 L(어분) 적용관세율	1.20%	1.00%	0.08%	0.60%	0.40%	0.20%	0.00%

- 또한 페루만 기재하고 있는 J1(4개 품목), J2(3개 품목), J3군(22개 품목)의 농산물 총 29개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4~10년까지 현행관세 유지를 허용(grace period)하도록 하였음.

■ 결국 중국은 대페루 수입액의 약 99%(관세품목 기준 94.5%), 페루는 대중국 수입액의 90%(관세품목 92%)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최장 1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즉각철폐에 해당하는 A 카테고리에는 중국의 대페루 수출품 중 62.7%(수출액 기준 61.8%), 페루의 대중 수출품 중 61.2%(수출액 기준 83.5%)가 포함되어, 협정발효 시부터 영관세가 적용됨.

- 한편 관세철폐에서 제외된 D 카테고리에는 중국의 대페루 수입액의 1%(관세품목수 422개), 페루의 대중국 수입액의 10%(관세품목수 592개)에 해당하는 품목이 포함되었음.[7)]

표 5. CPFTA 상품협상 카테고리별 관세양허

중국 양허					페루 양허				
카테고리	관세 품목수	비중(%)	대페루 수입액	비중(%)	카테고리	관세 품목수	비중(%)	대중국 수입액	비중(%)
A	**4,747**	**61.19**	**3,417**	**83.52**	**A**	**4,610**	**62.71**	**1,391**	**61.82**
B	908	11.70	15	0.37	B	951	12.94	301	13.38
C	1,604	20.68	55	1.34	C	1,055	14.35	246	10.92
D	**422**	**5.44**	**42**	**1.02**	**D**	**592**	**8.05**	**225**	**10.00**
E	5	0.06	6	0.16	E	87	1.18	87	3.89
F	14	0.18	17	0.41	–	–	–	–	–
G	24	0.31	5	0.12	G	5	0.07	0	0.00
H	12	0.15	0	0.00	H	22	0.30	0	0.00
I	20	0.26	0	0.00	J1	4	0.05	0	0.00
K	1	0.01	8	0.20	J2	3	0.04	0	0.00
L	1	0.01	526	12.86	J3	22	0.30	0	0.00
합계	7,758	100.00	4,091	100.00	합계	7,351	100.00	2,251	100.00

주: 수입액과 수입총액은 2007년 기준, 단위는 미화 백만 달러.

자료: RESUMEN EJECUTIVO,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Per y China에서 인용하여 필자가 재구성.

나. 서비스협정

1) 서비스 협정문과 양허안의 주요내용

■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교역(trade in services)과 비즈니스 인력(business persons)을 위한 임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을 포함하고, 서비스 분야별 양허안과 임시입국 양허안이 부속서로 첨부되었음.

7) 600여 개에 달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의 설정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FTA의 정신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음(*International Trade Daily* 2008.11.24, "China, Peru Conclude Bilateral Negotiations On Free Trade Pact to Be Signed in Early 2009." 참고).

- 서비스 분야별 양허안에서는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의무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개방 영역을 GATS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positive approach)을 채택하여 서비스 산업 개방 영역과 제한사항을 기재하였음.

- 중·뉴질랜드 FTA에 포함되었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는 포함되지 않았음.[8)]

■ CPFTA는 GATS 양허안을 기준으로 양국이 좀 더 진전된 서비스 개방을 이룩한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의 구체 양허에 있어서 페루는 채광업, 연구개발업, 중국어교육, 중의학, 무술 등 90개 부문에서, 중국은 채광업, 컨설팅, 통번역, 교육, 여행 등 16개 분야에서 진전된 개방양허를 기재하였음.[9)]

■ 특히 중국은 CPFTA 양허안에서 채광업과 자연과학 R&D 서비스 분야를 최초로 포함시켜 개방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기존에 개방했던 여행관광업, 부동산 서비스 및 통번역 서비스에서도 DDA 2차 수정양허안보다 진전된 양허를 기재하였음.

- 여행사 및 관광업(CPC 7471) 분야: 중국은 DDA 양허안에서 상업적 주재의 시장접근에 대해 사업범위 및 자본요건 제한을 기재하고 합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했으나, CPFTA에서는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완전개방하였음.

- 채광업 관련 서비스(석유와 천연가스 관련만 포함): 중국은 CPFTA에서 최초로 동 분야를 양허안에 기재(DDA+)하였음. 한편 시장접근에 있어서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석유 및 가스 탐사의 형태만을 허용하는 제한을 두었음.

- 자연과학 R&D 서비스(CPC 8510) 분야: 중국은 CPFTA에서 최초로 동 분야를 양허안에 기재(DDA+)하였고, 외자독자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였음.

  ○ 다만 양허부문에서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외국투자 금지목록에 포함된 R&D 서비스는 제외한다는 제한을 두었음.

8) 페루는 미래 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중국이 반대하여 MFN 조항은 협정문에서 배제되었음. 중국이 서비스무역에 대해 MFN 대우를 포함시킨 FTA는 중·뉴질랜드 FTA가 유일하며, 동 FTA에 있어서도 분야를 한정한 제한적인 MFN 대우를 약속하였음.

9) 商務部新聞辦公室, 商務部新聞發言人就中國与秘魯結束自由貿易區談判答記者問(2008.11.20).

- 부동산 서비스(CPC 821, 822): 중국은 동 분야에서 페루에 독자기업설립을 허용하고, 고수준 부동산 프로젝트(high standard real estate project: 아파트와 사무용 빌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삭제함으로써 DDA보다 진전된 개방양허를 작성함.

- 통번역 서비스: 내국민대우의 인력이동 제한 사항 중 경력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 비즈니스 인력의 임시입국에 관한 개방내용은 중·뉴질랜드 FTA나 중·싱가포르 FTA보다 개방수준이 떨어짐.

- 인력이동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구체양허를 부속서로 첨부하였으나, 구체양허 범주가 사업방문자와 기업내 전근자의 2개에 그쳤음.

○ 중·싱가포르 FTA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CSS)가, 중·뉴질랜드 FTA는 설치자/서비스업자(Installers/servicers)가 포함되어 각각 3개 범주에 대해 인력이동 양허가 기재되었음.

- 또한 기체결 FTA에서 인력이동에 관해 양허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상대국의 양허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양허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남.

○ 인력이동의 구체양허를 포함한 3개의 FTA 모두에서 중국은 사업방문자에 대해 6개월, 기업내 전근자에 대해 3년을 허용하고 있음.

표 6. 중국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표

	CPFTA		CSFTA		CH-NZ FTA	
	중국	페루	중국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
사업방문자 (Business visitor)	최대 6개월	180일까지 가능	최대 6개월	5년 복수비자 60일, 기타 비자 30일 (30일 연장가능)	최대 6개월	최대 3개월
기업내 전근자(ICT)	3년	1년까지 갱신 가능	3년	2년, 8년까지 3년씩 연장가능	3년	임원급-3년, 기업고용전문가-12개월, 전문가-3년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	-	1년(9개 분야로 한정)	90일, 90일 연장가능.	-	-
설치자/ 서비스업자 (Installers/Servicers)	-	-	-	-	최장 3개월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3개월 초과할 수 없음

자료: 각 협정문 부속서.

다. 투자 협정

■ 투자협상은 투자자유화 협정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으나, 일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개방된 수준에 도달하였음.

- CPFTA의 투자장 협상은 중국과 페루가 1994년에 투자보장협정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투자자유화 협정의 수준까지 진전되지는 못하였음.[10]

- CPFTA의 투자협정에는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비합치조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포함시켰음.

  ○ 또한 공공이익을 위해 법정 과정을 거친 수용(Expropriation)만을 허용하며, 투자자 보상에 있어서 시장가치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와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였음.[11]

- 수용(expropriation)에 있어서는 NAFTA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속서를 첨부하고,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 "공공복지의 합법적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 또한 페루 측의 제안으로 '핵심안보(Essential security)'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이로써 수용에 있어서 국가안보적 측면이 포함되었음.

■ 투자 장을 별도로 구성한 중국 기체결 FTA인 중·파키스탄 FTA,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할 때, CPFTA 투자 장의 내용은 중·파키스탄 FTA보다는 진전되었고, 중·뉴질랜드 FTA보다는 낮은 수준임.

- 현재까지 중국이 체결한 FTA 중 투자협정문을 포함한 경우는 중·뉴질랜드 FTA , 중·파키스탄 FTA와 CPFTA이며, 중·뉴질랜드 FTA의 개방수준이 가장 높고 중·파키스탄 FTA 개방수준이 가장 낮으며 CPFTA는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합의됨.

-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을 별도 섹션으로 처리하여 비중있게 다룬 반면 CPFTA는 한 개의 조항으로 처리하였음.

10) 협상일지에 따르면 투자자유화 협정의 주요요소인 설립전 투자행위(activities of pre-establishment)에 대한 내국민대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자는 중국 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음.
11) 商務部新聞辦公室, 商務部新聞發言人就中國与秘魯結束自由貿易區談判答記者問(2008.11.20).

- 중 · 뉴질랜드 FTA에서는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를 설립한 반면, CPFTA에서는 투자와 관련한 회의(meetings)를 부정기적(from time to time)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협정의 실행관련 기구의 위상이 미약한 편임.

- 한편 CPFTA는 중·파키스탄 FTA와 비교할 때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고, 시장가치 기준으로 수용을 보장한 점, ISD의 구체내용 면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7. 중국 기체결 FTA 투자협정문 구성 비교표

	중·페루 FTA(2008)	중·뉴질랜드 FTA(2008)		중·파키스탄 FTA(2006)
1	정의	투자	정의	정의
2	범위		목적	투자 증진 및 보호
3	투자 증진 및 보호		범위	투자의 대우
4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수용
5	비합치조치		최혜국대우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보상
6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송금
7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비합치조치	대위변제
8	수용		송금	체약 당사자간 분쟁해결
9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투자자와 다른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10	송금		손실에 대한 보상	기타 의무
11	대위변제		수용	협의
12	혜택의 부인		투명성	
13	체약 당사자간 분쟁해결		연락처	
1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대위변제	
15	회의		혜택의 부인	
16	핵심안보		투자위원회	
17	세제 조치		투자 증진 및 촉진	
18	기타 의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협의 및 협상	
19			클레임 제기에 대한 동의	
20			클레임의 수리가능성 및 선결적 항변	
21			협정문의 해석	
22			합동 청구	
23			중재과정 관련 정보 및 서류의 공개	
24			판정	

자료: 각 협정문에서 필자 정리.

라. 지식재산권

■ CPFTA에서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였음.

- 중국은 기존 FTA 협상에 지식재산권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12]을 보여왔으며, 지식재산권을 별도 장으로 구성한 최초의 선례인 중·뉴질랜드 FTA에서도 선언적인 내용을 담는 수준에 그침.

- CPFTA는 지식재산권을 별도 장으로 구성한 두 번째 FTA이며, 중국은 특히 이를 지리표시제를 이용하여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였음.

  ○ 중·칠레 FTA에서도 샤오싱주(Shaoxing Wine)와 티에관인차(Anxi Tieguanyin) 2개 명칭에 대한 지리표시제를 포함하였으나, 별도의 지식재산권 장을 만들지 않고 상품협정문의 한 조항으로 기재하였음.

■ 지리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에 있어서 중국 22개,[13] 페루 4개[14]의 목록을 부속서로 첨부함.

4. 결론

■ CPFTA는 상품협정, 특히 농산품에 대한 협정문과 관세삭감 양허가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자세하고 정교하여, 향후 한·중 FTA의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체결 FTA와 구별되게 상품 협정문에서 농업 섹션을 별도로 마련한 점과 관세삭감 양허에서도 농업제품의 관세철폐 유예를 위해 다수의 카테고리를 추가한 점 등은, 향

12) 중·호주 FTA 협상일지 참고.

13) Anxi Tie Guanyin(Tieh-Kuan-Yin) Tea(安溪鐵觀音), Shaoxing(Yellow) Wine(紹興酒), Fuling Pickled Mustard Tuber(涪陵榨菜), (Ningxia) Zhongning Matrimony Vine(宁夏)中宁枸杞, Jingdezhen Porcelain(景德鎭瓷器), Zhenjiang Aromatic Vinegar(鎭江香醋), Pu'r Tea(普洱茶), (Xihu)Longjing Tea(西湖)龍井茶, Kinghwa(Jinhua) Ham (金華火腿), Shanxi Mature Vinegar(山西老陳醋), Xuanwei Ham (宣威火腿), Longquan Celadon(龍泉靑瓷), Yixing Dark-red Enamelled Pottery(宜興紫砂陶), Korla Fragrant Pear(庫爾勒香梨), Min County Tang-Kuei(Chinese angelica root)(岷縣当歸), Wenshan Notoginseng(文山三七), Wuchang Rice(五常大米), Tongjiang White Fungus(通江銀耳), Bama Miniature Pig(八馬香猪), Taihe Blackbone Chicken(泰和烏鷄), Fuding Shaddock(福鼎四季柚), (Nanjing) Cloud-pattern Brocade ((南京)云錦) 등 총 22개.

14) Pisco Peru(Pisco Perú), Chulucanas Pottery(Cerámica de Chulucanas), Cusco Giant White Corn (Maíz Blanco Gigante Cusco), Pallar Bean from Ica (Pallar de Ica) 등 총 4개.

후 한국이 중국과 FTA 협상을 전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FTA 협정문의 구성 유형이 될 수 있음.

- 한편 2008년 협상 개시가 예정된 한·페루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양허유형과 장기 관세철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15] 중·페루 FTA의 농업부문 협상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2008년 타결된 3개의 FTA 협정문에서 모두 인력이동에 관한 장을 별도로 구성하고 양허안을 부속서로 첨부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CPFTA에서 지식재산권을 별도 장으로 구성하고, 지리표시제 목록을 부속서로 첨부한 것을 볼 때, 중국은 한·중 FTA에서도 지리표시제에 관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

15) 정철 외(2008),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42호.